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2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계신청시 납부하는 반납금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안 제3조)

직역기관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을 연계 신청하는 경우 반납하여야 하는데, 그 반납금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기존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 하던 것(5년 미만 24회 이내, 5년~10년 48회 이내, 10년 이상 60회 이내)을 분할납부 횟수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60회 이내에서 연계신청인이 정하도록 함.

나.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운영(안 제15조의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

건복지부 연금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적 연금 관련부처(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보건 복지부 등)의 4급이상 공무원(과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민연금 과 직역연금의 주요 정책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계신청인의”를 “60회 이내에서 연계신청인의”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 횟수 이내에서”를 “정하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사혁신처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국방부
5. 보건복지부
6. 그 밖에 연금연계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연계급여에 관련된 주요 사항
3.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계급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계급여 및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생략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② (생략) ③ 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그 납부 횟수는 <u>연계신청인의</u> 요청을 받아 <u>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 횟수 이내에서</u> 연계신청인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반납금등을 다 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u>직역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u> 경우: 24회 2. <u>직역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u> 경우: 48회 3. <u>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u> 경우: 60회 ④ (생략) <u>제10조(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1. <u>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인사혁신처</u>	제3조(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60회 이내에서 연계신청인의</u> ----- <u>정하되,</u> ----- ----- ----- -----.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신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1명

3.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명

제1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삭제>

<삭제>

<삭제>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
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하
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 두
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
소 및 심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연금가입자, 연금가입자였던
사람, 연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그 밖에 연계급여의 이해관계인
은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회의
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
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4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
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
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등) <삭
제>

<삭 제>

<삭 제>

제13조(간사) <삭 제>

<삭 제>

<삭 제>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
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삭 제>

제15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
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위원
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연금 업무
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
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속
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
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
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사혁신처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국방부

5. 보건복지부

6. 그 밖에 연금연계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 연계급여에 관련된 주요 사항

3.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계급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계급여 및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634